

채용 이의신청서

지원자 정보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자 정보는 누락 없이 모두 기재(누락 시 접수되지 않음) - 채용 절차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 - 기타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dream@job-plus.co.kr) 제출			
상기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작성 참고사항>

- 이의신청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15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단, 서류·필기 단계 이의신청은 각 전형 결과발표일로부터 2일간
-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라며,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필기·면접 시험문제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 (처리에외사유) ① 지원자 정보 누락, ② 채용절차와 무관한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③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④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